



# 14주차: 파생상품회계



## 학습목표:

1.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예와 거래목적 이해할 수 있다.
2. 파생상품의 정의와 회계처리의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.
3. 위험회피회계를 이해하고 적용요건을 구분할 수 있다.
4.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이해하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.



## 제5판 고급재무회계

본 수업자료는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김문철, 송인만, 전영순교수님의 고급재무회계 제5판의 내용의 일부를 수업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.



# 1절 파생상품의 의의

## 1. 파생상품의 개념

- 파생상품: 일반적으로 이자율, 주가, 상품가격, 환율, 각종 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의해 그 가치가 파생되는 금융상품
  - 장점: 개별 시장참여자에게는 위험의 회피, 새로운 수익창출 등의 수단
  - 단점: 부외거래이고 거래비용 대비 기대수익률이 높아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전체의 위험 증가
-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및 공시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나 금융질서를 확립해야 할 감독기관에도 중요한 문제임



# 1절 파생상품의 의의

## 2. 대표적 파생상품

- 선도거래 :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하여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
  - 선도거래의 공정가치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변함
  - 계약불이행위험 때문에 실제 선도거래는 계약조건이 법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도록 규정
- 선물 : 수량·규격·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시점에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·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됨
  - 증거금, 일일정산제도, 청산기관 등의 계약이행에 관련된 위험을 줄이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





## 2절 파생상품의 정의 및 회계처리

### 1. 파생상품의 정의 (K-IFRS 제 1109호)

- **요건: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**
  - (1)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
  - (2) 최초 계약시 적은 순투자금액
  - (3) 미래 결제

→ **요건주의를 택한 이유: 예시주의로 파생상품을 정의하면 회계기준의 운용상 경직성을 초래하며 재무정보 생산에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**
- **파생상품회계의 적용배제**
  - **정형화된 매매거래**: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정시키는 거래이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지 않음
  - **금융보증계약**: 일반적으로 금융보증계약은 파생상품회계의 적용대상이 아님



## 2절 파생상품의 정의 및 회계처리

### 2.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

-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·부채로 인식
  - 결제시점에서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파생상품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
  - 반대로 결제시점에서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파생상품은 미래에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인 부채 계상의 요건을 충족
- 모든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와 결산시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함
  -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
  - 다만, 파생상품의 거래목적 위험회피목적이고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



# 1절 파생상품의 의미

## (1) 위험회피유형

- 위험회피(hedging)란? 특정위험으로 생긴 익스포저(위험노출액)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
  - 공정가치위험회피: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
  - 현금흐름위험회피: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
  -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: 해외사업장순투자를 지배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위험의 회피



## 2절 파생상품의 정의 및 회계처리

### (2) 위험회피회계

-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
사례) 재고자산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,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하여 재고자산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이 상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계기준을 적용하면(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) 위험회피활동의 성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  
→ 회계불일치 발생

- **위험회피회계** :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것 → 특수회계
  -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: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손익을 당해연도의 손익으로 인식
  -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: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예상거래가 실행되는 시점에 관련 자산·부채에 가감하거나 예상거래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



# 3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

## 1. 위험회피수단

- 특정 대상항목(자산, 부채, 확정계약, 미래현금흐름 등)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(또는 비파생금융 부채)

## 2. 위험회피대상항목

-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을 통해 그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대상 →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나 부채, 확정계약, 미래 예상거래, 해외사업장순투자
- 위험회피대상항목은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고,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
-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예상거래인 경우에는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함



# 3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

## 3.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

-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
    - (1) 위험회피관계는 **적격한** 위험회피수단과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만 구성
    - (2)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와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**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**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**문서화**한다.
    - (3)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
      - (가)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**경제적 관계**가 있다.
      - (나) **신용위험의 효과**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**지배적이지 않다**.
      - (다) 위험회피관계의 **위험회피비율**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.
-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부터 지속적으로 **최소한 매 보고일에 평가**해야 한다



# 4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

## 1.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유형

- 변동금리부 자산·부채의 이자현금흐름 변동위험회피
  - 이자율의 변동으로 미래 이자로 수취되는 현금흐름의 크기가 변동하는 위험을 회피
  - 예: 변동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, 변동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,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용한 이자율스왑
- 미래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회피
  - 거래를 계획하는 시점과 실제 거래가 수행되는 시점 간에 시장가격이 변동하는 위험을 회피
  - 예: 미래의 재고자산 매출(매입) 예상



# 4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

## 2.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회계처리

-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을 위험회피대상인 미래 현금흐름변동이 발생하는 기간에 적절히 대응하여 상계처리
-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
  -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: 당기손익
  -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: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(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)
-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: 기타포괄손익 계상

구 분	① > ②	① < ②
① 파생상품평가손익	이익 ₩110	이익 ₩100
②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액 현가	손실 ₩100	손실 ₩110
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	₩100	₩100
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	₩10	- 없음 -



## 4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

-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해야 할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회계기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기준으로 산정

(예시 1)

	20×1년		20×2년	
	이익	누적	이익	누적
① 파생상품평가이익	₩110	₩110	₩100	₩210
②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액의 현가	손실 ₩100	누적 ₩100	손실 ₩110	누적 ₩210
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	₩100	누적 ₩100	₩100 + ₩10	누적 ₩210
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	이익 ₩10		손실 ₩10	

(예시 2)

	20×1년		20×2년	
	이익	누적	이익	누적
① 파생상품평가이익	₩100	₩100	₩110	₩210
②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액의 현가	손실 ₩110	누적 ₩110	손실 ₩100	누적 ₩210
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	₩100	누적 ₩100	₩100 + ₩10	누적 ₩210
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	-없음-		-없음-	



## 4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

-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의 처리
  - (1)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 
→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직접 조정
  - (2) 위 (1)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
→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(예,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이나 예상매출이 생긴 때)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
  - (3) 만일,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,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



## 4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

[참고] 20×1년 12월 31일에서의 금의 현물가격이 ₩304,000임을 가정하면,

- 누적미래예상현금흐름 변동액의 현가는 ₩39,625으로 산정됨  
\*  $39,625 = \{(\text{₩}304,000 - 300,000) \times 100Z\} / (1.06)^{59/365}$
- 금선도계약의 누적평가이익 ₩49,531은 누적미래예상현금흐름 변동액의 현재가치를 ₩9,906만큼 초과하게 됨
- 따라서 금선도계약 누적평가이익 중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는 부분은 ₩39,625이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초과액 ₩9,906은 당기손익에 반영됨
- 분개: (차) 금선도 49,531 (대)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39,625  
(기타포괄손익)  
금선도평가이익(당기손익) 9,906



## 4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

### 3.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

-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: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액
- 회피대상위험: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이나 투자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
-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바,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도 다음과 같이 대응되어야 함
  - 효과적인 부분: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
  - 비효과적인 부분: 당기손익으로 인식
-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  
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